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원전 핵심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1 사업개요

□ 내역사업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입찰·인증취득, 현지 진출 전략 수립, 해외지사 설립 등 맞춤형 지원
 - * 동반진출 :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 독자수출 : 기업당 최대 2억 원

□ 모집기간 : 2026. 8. 19. ~ 8. 31.(모집기간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11. 30.(독자수출의 경우 2027. 11. 30.)

2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분 야	지 원 기 준 및 대 상
공통요건 (택 1)	①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②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 (KEPIC, ASME 등) ③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동반진출 /독자수출	◦ 공통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업의 기술수준, 원자력 매출 및 R&D 비중, 해외진출 역량 등 종합 평가하여 밸류체인 별로 성장의지가 높은 기업 선정

3 지원규모

□ 지원항목(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지원분야	세 부 항 목		지원한도
동반진출 지원	현지법인 설립	법인 설립을 위한 물류운송, 인증 및 수입통관, 사무공간 임차, 현지인력 채용, 회계·세무·법률, 통번역, 컨설팅 등 현지 법인 설립·운영비 지원	8,000만원
	기술인증 취득	원자력 관련 해외 기술기준 및 품질인증(ASME, IEEE, ISO 19443 등) 취득, 특허출원 및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국내 실증비용 등 지원	8,000만원
	매출증대 활동	원전분야 해외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초청 등 수주활동, 해외 진출국가의 규제 대응 등 수출대응 전략 컨설팅 등 지원	8,000만원
	입찰 참여	해외원전 사업 발주처 등록 및 입찰참여 준비 비용 등 지원	8,000만원
	수출 마케팅	현지 자체 기술세미나 개최, 홍보자료 제작, 전문 기술문서 및 기업 소개자료 번역비, 비즈니스 미팅 통역비 등 지원	6,000만원
	해외 법률·세무	국외 진출 관련 분쟁 발생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유출관련 자문, 국외 소비자 및 기업정보 보호에 따른 법률 검토 등 법률/세무 자문 비용 지원	3,000만원
	시장조사	해외시장/제품 조사분석컨설팅, 전시·박람회 참가 등 지원	3,000만원
독자수출 지원	현지법인 설립	법인 설립을 위한 물류운송, 인증 및 수입통관, 사무공간 임차, 현지인력 채용, 회계·세무·법률, 통번역, 컨설팅 등 현지 법인 설립·운영비 지원	2억원
	기술인증 취득	원자력 관련 해외 기술기준 및 품질인증(ASME, IEEE, ISO 19443 등) 취득, 특허출원 및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국내 실증비용 등 지원	1.5억원
	매출증대 활동	원전분야 해외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초청 등 수주활동, 해외 진출국가의 규제 대응 등 수출대응 전략 컨설팅 등 지원	1억원
	입찰 참여	해외원전 사업 발주처 등록 및 입찰참여 준비 비용 등 지원	1억원
	수출 마케팅	현지 자체 기술세미나 개최, 홍보자료 제작, 전문 기술문서 및 기업 소개자료 번역비, 비즈니스 미팅 통역비 등 지원	6,000만원
	해외 법률·세무	국외 진출 관련 분쟁 발생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유출관련 자문, 국외 소비자 및 기업정보 보호에 따른 법률 검토 등 법률/세무 자문 비용 지원	3,000만원
	시장조사	해외시장/제품 조사분석컨설팅, 전시·박람회 참가 등 지원	3,000만원

* "동반진출"과 "독자수출"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통합 제출

예 1) "기술인증취득", "입찰 참여" 2개 과제 신청 희망 시 사업계획서 1종 제출

□ 지원규모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동반진출	최대 8천만원 이내	중소기업 : 80%	20%
독자수출	최대 2억원 이내	중견기업 : 60%	40%

-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을 지원(VAT 제외)
- * 자기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예: 자기부담금 1,000만원 구성 시 현금 100만원, 현물 900만원 구성 가능)
- * 인건비의 경우 현물로만 계상 가능
-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단,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선정방법

- 평가방법
 -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표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 산출)
- 선정결과 확인 :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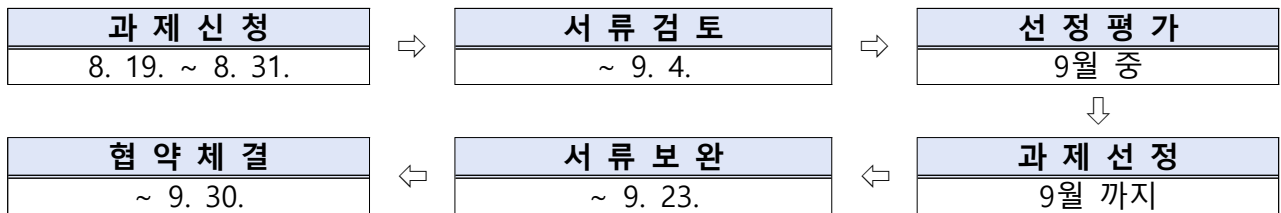
□ 선정배제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우대대상(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 기업

□ 사업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제출서류(사업지침 서식 참조)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원전 핵심기업 육성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청렴이행서약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 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확인서를 제출한 해당기업)	선택	공통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kaif.or.kr)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tech@kaif.or.kr)

5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운영됨
-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참여신청 시 사업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한 관리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조사,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6 사업별 문의처

- 기업지원팀 연구원 최은하(02-6953-8732 / tech@kaif.or.kr)
기업지원팀 과장 유귀현(02-6257-2596 / tech@kaif.or.kr)

7 기타사항

- 신청 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 :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